

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「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」(2024. 6. 19. 관계부처 합동)에 따라 돌봄시설이 부족한 지역에 돌봄시설을 원활히 조성할 수 있도록 종교시설과 노유자시설 간 복수용도를 허용하고자 하는 경우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간소화하여 국민의 불편을 완화하고 건축물의 활용도를 제고하려는 것임.

2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4. 11. 18. ~ 12. 28.)

3) 행정규제 :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국토교통부령 제 호

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건축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조의3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영 제14조제5항제4호나목과 같은 항 제6호다목에 따른 용도간의 복수 용도를 허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2조의3(복수 용도의 인정) ① (생 략)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허가권 자는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른 시설군의 용도간의 복수 용도를 허용할 수 있다. <u><단서 신설></u>	제12조의3(복수 용도의 인정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-- ----- -----. <u>다만, 영 제14조제5항제4호나목</u> <u>과 같은 항 제6호다목에 따른</u> <u>용도간의 복수 용도를 허용하고</u> <u>자 하는 경우에는 지방건축위원</u> <u>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.</u>